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4일, 문대림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사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문대림 의원)

현행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선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물류 환경변화, 선박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도선구의 경우 단독 운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개정안은 도선구 통합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이후 도선훈련과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도선사 수가 극히 적은 제주 도선구와 같이, 도선사 퇴직 이후 도선 서비스의 중단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도선사 인력의 고령화와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개정안은 통합·흡수되는 도선구의 도선사만을 대상으로 도선훈련 이수 및 면허 발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은 존속 도선구의 도선사가 통합된 새로운 수역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임.

따라서, 존속 도선구의 도선사도 통합·흡수된 지역의 도선훈련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임.

둘째, 새로운 도선사 면허 발급에 있어 적정한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따른 교육훈련이 실제로 수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¹⁾

셋째, 개정안의 문구와 관련하여 ‘도선구 흡수·통합 시 도선사 배치를 존속 도선구에 배치한다’고 규정한 내용은 통합이 기존 도선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선사회가 두 개의 도선구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임을 고려할 때, 실제 존속 도선구의 배치 지역이 어디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며,

‘흡수’라는 용어가 일방적 소멸을 전제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도선구 A와 B가 통합되어 새로운 도선구가 형성되는 구조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선구 통합’ 등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로 수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선교)

존속 도선구의 도선사가 통합된 새로운 수역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괄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도선사 면허 취소사유를 추가하며, 정년이 임박한 도선사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함.

1) 참고로, 「도선법」 및 「도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선사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경우 3개월의 기간동안 100회 이상 승선하여 도선훈련을 받아야, 새로운 도선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개정안이 흡수·통합되는 도선구의 도선사만을 도선훈련 및 신규 면허 발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합된 수역에서 도선업무를 하는 존속 도선구의 도선사가 적용대상에서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제17조로 옮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흡수’를 ‘통합’으로 정비하는 한편, 정년이 3년 미만 남은 도선사에 대한 도선훈련 면제 근거와 면허 취소사유를 신설하고, 신규 면허의 유효기간 기산일과 부칙 인용조문을 정비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이 흡수·통합되는 도선구의 도선사만을 도선훈련 및 신규 면허 발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합된 수역에서 도선업무를 하는 존속 도선구의 도선사가 적용대상에서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제17조로 옮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흡수’를 ‘통합’으로 정비하는 한편, 정년이 3년 미만 남은 도선사에 대한 도선훈련 면제 근거와 면허 취소사유를 신설하고, 신규 면허의 유효기간 기산일과 부칙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2조의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제22조제1항”을 “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17조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않고 새로운 구역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

13. 제17조제3항에 따라 도선을 할 수 없는 곳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둘 이상의 도선구가 하나의 도선구로 통합되는 경우 해당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받기위해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합쳐진 도선구에 대한 도선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운 도선구에서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선구가 통합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7조에 따른 정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도선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는 도선 업무를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도선구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면허에 대한 효력 유지 기간 및 훈련 이수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22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흡수·통합된”을 “통합(합구)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도선사 면허는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를 “통합(합구)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도선사 면허는 제17조제2항의”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u>제22조 제1항</u>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 ----- ----- ----- ----- ----- ----- ----- ----- ----- ----- <u>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u> ----- ----- ----- ----- -----

도선사면허의 갱신
을 받은 날부터 5
년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제2호의
2 또는 제3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신설>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현행과 같음)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17조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않고 새로

<u><신 설></u> ② ~ ⑥ (생 략) 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17조(도선구) (현행과 같음)	<u>운 구역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u> 13. 제17조제3항에 따라 도선을 할 수 없는 곳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선구) ①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둘 이상의 도선구가 하나의 도선구로 통합되는 경우 해당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받기 위해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합쳐진 도선
--	---------------------------	--

<신 설>

구에 대한 도선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운
도선구에서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
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도선구가 통합되는 날을 기준
으로 제7조에 따른 정년이 되는 날까
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도선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도선훈
련을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는 도선업

<신 설>

<신 설>

제22조의2(도선사의
통합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도선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하나의 도선구에
다른 도선구를 흡
수·통합시키는 경
우 흡수·통합된
도선구의 도선사를
존속하는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
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무를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도선구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면허
에 대한 효력 유지
기간 및 훈련 이수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

<삭 제>

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양수산부장
관은 존속하는 도
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
선사 면허를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통합 도
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도
선사가 흡수·통합
된 도선구에서 존
속하는 도선구로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
안과 같음)

제2조(도선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
-----통합(합구)
된-----

<u>배치되어</u>	-----
<u>도선업무</u>	-----
<u>를 하는 경우 이</u>	----- <u>통</u>
<u>법 시행 당시 보유</u>	<u>합(합구) 당시 보</u>
<u>하고 있는 도선사</u>	<u>유하고 있는 도선</u>
<u>면허는 제22조의2</u>	<u>사 면허는 제17조</u>
<u>제1항 후단의 개정</u>	<u>제2항의</u> -----
<u>규정에 따라 새로</u>	-----
<u>도선사 면허를 받</u>	-----
<u>기 전까지 유효한</u>	-----
<u>것으로 본다.</u>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제22조제1항”을 “제17조제2항 후단 및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구역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

1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둘 이상의 도선구가 하나의 도선구로 통합되는 경우 통합된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받기 위하여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 대한 도선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서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선구가 통합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7조에

따른 정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도선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는 도선업무를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통합된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 도선훈련 이수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도선사가 통합된 도선구에서 통합 전에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구의 구역에 배치되어 도선업무를 하는 경우 통합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도선사면허는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u>제22조제1항</u>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 ----- ----- ----- ----- ----- ----- ----- <u>제17조제2항</u> 후단 <u>및 제22조제1항</u> ----- ----- ----- ----- ----- ----- -----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 ----- ----- ----- -----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 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⑥ (생 략)

제17조(도선구) (생 략)

<신 설>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지 아니
하고 새로운 구역에서 도선업
무를 한 경우

13. 제1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
여 도선훈련을 받지 않은 구
역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선구)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도선구의 구
역이 변경되어 둘 이상의 도선
구가 하나의 도선구로 통합되
는 경우 통합된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받기 위하여 도
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 대한 도선훈련을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
에서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

<신 설>

<신 설>

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선구
가 통합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
7조에 따른 정년이 되는 날까
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도선
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는 도선업무를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통
합된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
허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
도선훈련 이수 기한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